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2호 2015. 10. 30. (금요일)

<b>선 람</b>	<b>기 관 의 장</b>
----------------	----------------------------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36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2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7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01차) ..... 17
- 하동군 고시 제2015-79호      농어촌 새뜰마을(범왕지구)사업 기본계획 수립 ..... 19
- 하동군 고시 제2015-8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02차) ..... 22
- 하동군 고시 제2015-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25
- 하동군 고시 제2015-83호      농업생산기반 정비(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 30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891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 32
- 하동군 공고 제2015-896호      섬진강 신기지구 저수호안 보수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43
- 하동군 공고 제2015-912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 하동군 공고 제2015-913호      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47
- 하동군 공고 제2015-915호      하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행정예고 ..... 48

<b>회 람</b>									
----------------	--	--	--	--	--	--	--	--	--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42호 2015. 10. 30. (금요일)

<b>선 람</b>	<b>기 관 의 장</b>
----------------	----------------------------

##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36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2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7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01차) ..... 17
- 하동군 고시 제2015-79호      농어촌 새뜰마을(범왕지구)사업 기본계획 수립 ..... 19
- 하동군 고시 제2015-8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02차) ..... 22
- 하동군 고시 제2015-8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25
- 하동군 고시 제2015-83호      농업생산기반 정비(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 30

##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891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 32
- 하동군 공고 제2015-896호      섬진강 신기지구 저수호안 보수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43
- 하동군 공고 제2015-912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 하동군 공고 제2015-913호      201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47
- 하동군 공고 제2015-915호      하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행정예고 ..... 48

<b>회 람</b>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 2 ) 제 442 호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30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36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3조제1항의 과태료는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 방법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진 정비·철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고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부한다. 다만, 긴급히 정비·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정비·철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고기간 내 스스로 정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고를 받은 자가 그 계고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고를 생략하고 제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유형을 적용한다.

⑥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납부고지) ① 과태료 처분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 기한은 고지서 납부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5조(이의신청)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 제 442 호

[별표 1]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 및 제3조제5항 관련)

위반 유형	위반 내용	과태료
1. 도로위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상점, 점포 등이 도로상에 상품·물건 진열·적치, 상행위(노점상등) 및 이와 유사한 행위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도로위에 건축자재 및 제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시멘트, 철재, 목재, 골재, 석재, 블록, 벽돌 등)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2. 도로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도로위에 각종 공작물 및 시설물 설치(파손, 손괴 등) 및 이와 유사한 행위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도로위에 각종 기계기구류 및 자재를 이용하여 조립, 수리, 용접, 제작 등의 작업행위와 진열·적치 및 이와 유사한 행위(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농기계, 모터 펌프, 타이어, 간판 등)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별지 제1호서식】

### 계 고 서 수 령 증

제 호

1. 주 소:

3. 위 반 일:

2. 성 명:

4. 위반 장소:

5. 위반 사항:

귀하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였으니, 위반 사항을 년 월 일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동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계고합니다.

(단,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계고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에는 계고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주소 :

성 명 :

송달자 성명 :

인

### 하동군수 귀하

### 계 고 서

제 호

1. 주 소:

3. 위반 일시:

2. 성 명:

4. 위반 장소:

5. 위반 사항:

귀하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였으니, 위반 사항을 년 월 일까지 자진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동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계고합니다.

(단,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계고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에는 계고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귀하

## 하 동 군 공 보

( 6 ) 제 442 호

[별지 제2호서식]

###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세입 과목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위반 사항	도로 무단점용
금 액	원
납부 기한	
납부 장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하 동 군 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과태료 영수증 통지서(시·군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성 명	
생년월일	
부과 기준	
세입 과목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위반 사항	도로 무단점용
금 액	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기관 :	년 월 일 수 납 인 귀하

### 과태료 납부서(수납기관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성 명	
생년월일	
부과 기준	
세입 과목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위반 사항	도로 무단점용
금 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기관 :	년 월 일 수 납 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과기간		납부고지서번호	
	고지일자		금 액	원
	처분사유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p style="text-align: center;">위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하동군수 귀하</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하동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하동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과태료 부과기준)</b> 조례 제3조제2항의 과태료는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p>	<p><b>제2조(과태료 부과기준)</b> 조례 제3조제1항의 과태료는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p>
<p><b>제3조(부과방법 및 시기)</b>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자진정비, 철거토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고장을 발급한다. 단, 긴급히 정비 또는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정비, 철거토록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계고기간 내 자진정비, 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고를 받은 자가 그 계고장을 발급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할 경우는 계고를 생략하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p>	<p><b>제3조(과태료 부과 방법 등)</b>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고장을 발부하여 자진 정비·철거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계고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부한다. 다만, 긴급히 정비·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즉시 정비·철거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계고기간 내 스스로 정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p>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④ <u>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3회 이상 위반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매 위반행위 때마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3회“를 적용한다.</u></p> <p>⑤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u>그 위반 유형 중에서</u> 중한 유형을 적용한다.</p> <p>⑥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u>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동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u> 과태료 부과기준 “1회“분부터 적용한다.</p> <p><b>제4조(과태료 납부고지)</b>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u>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의 <u>규정에</u>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 <u>발급일</u>부터 15일로 한다.</p> <p><b>제5조(이의신청)</b> 조례 제3조제3항의 <u>규정에</u>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④ 제1항에 따라 계고를 받은 자가 <u>그 계고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u> 계고를 생략하고 제2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⑤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u>가장</u> 중한 유형을 적용한다.</p> <p>⑥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이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u>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u> <u>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을</u> 적용한다.</p> <p><b>제4조(과태료 납부고지)</b> ① 과태료 처분 시에는 <u>별지 제2호서식에</u> 따른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은 고지서 <u>납부일</u>로부터 15일로 한다.</p> <p><b>제5조(이의신청)</b> 조례 제3조제3항에 <u>따른</u>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 하 동 군 공 보

( 10 ) 제 442 호

### < 현 행 >

[별표 1]

####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과 태 료		
		1회	2회	3회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상점, 점포 등에서 도로상에 상품, 물건의 진열, 적치, 상행위(노점상 등) 및 이와 유사한 행위	3만원	5만원	15만원
	도로상에 건축자재 및 제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시멘트, 철재, 목재, 골재, 석재, 블럭, 벽돌 등)	10만원	15만원	20만원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도로상에 각종 공작물 및 시설물 설치(파손, 손괴 등) 및 이와 유사한 행위	5만원	10만원	20만원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도로상에 각종 기계기구류 및 자재를 이용하여 조립, 수리, 용접, 제작 등의 작업행위와 진열, 적치 및 이와 유사한 행위(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농기계, 모터펌프, 타이어, 간판 등)	5만원	10만원	20만원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 하는 행위	위반 유형1-3항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3만원	5만원	10만원

(주) 도로라 함은 보차도, 자전거도, 가로화단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개정안>

[별표 1]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유형	위반 내용	과태료
1. 도로상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상점, 점포 등이 도로상에 상품·물건 진열·적치, 상행위(노점상등) 및 이와 유사한 행위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도로상 건축자재 및 제품 등을 적치하는 행위(시멘트, 철재, 목재, 골재, 석재, 블록, 벽돌 등)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2. 도로상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도로상 각종 공작물 및 시설물 설치(파손, 손괴 등) 및 이와 유사한 행위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 수리, 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도로상 각종 기계기구류 및 자재를 이용하여 조립, 수리, 용접, 제작 등의 작업행위와 진열·적치 및 이와 유사한 행위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농기계, 모터펌프, 타이어, 간판 등)	1㎡ 당 10만원 부과 (상한선 150만원까지)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계 고 서 수 령 증

제 호

1. 주 소:

3. 위 반 일:

2. 성 명:

4. 위반 장소:

5. 위반 사항:

귀하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였으니, 위반 사항을 년 월 일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동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계고합니다. (단,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계고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에는 계고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수령자 주소 :

성 명 :

송달자 성명 :

인

하동군수 귀하

계 고 서

제 호

1. 주 소:

3. 위반 일시:

2. 성 명:

4. 위반 장소:

5. 위반 사항:

귀하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였으니, 위반 사항을 년 월 일까지 자진정비·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까지 자진 정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동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을 계고합니다. (단,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계고기간 내 자진 정비·철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에는 계고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귀하

## 하 동 군 공 보

( 14 ) 제 442 호

[별지 제2호서식] (변경없음)

### 과태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세입 과목	임시적, 제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위반 사항	도로 무단점용
금 액	원
납부 기한	
납부 장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하 동 군 수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과태료 영수증 통지서(시·군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성 명	
생년월일	
부과 기준	
세입 과목	임시적, 제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위반 사항	도로 무단점용
금 액	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납기관 :	년 월 일 수 납 인 귀하

### 과태료 납부서(수납기관용)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성 명	
생년월일	
부과 기준	
세입 과목	임시적, 제외수입, 잡수입, 과태료
위반 사항	도로 무단점용
금 액	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수납기관 :	년 월 일 수 납 인 귀하

< 현 행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4.10>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납부고지서번호	
	고지일자		금 액	원
	처분사유			
처분에 대 한 불복사유				
<p>위의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p>				
하 동 군 수 귀 하				





하동군 고시 제2015-78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01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12.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농공단지길 16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0. 1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18 ) 제 442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324-6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농공단지길 16	20151012	20080402	주거구역은 없고 농공단지가 주로 입주해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공단지길이라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650-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27	20151012	20080402	제면당이라는 지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650-1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29	20151012	20080402	제면당이라는 지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650-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31	20151012	20080402	제면당이라는 지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송문리 650-1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제면당길 33	20151012	20080402	제면당이라는 지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663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집홀길 43-1	20151012	20080402	지세가 마치 집예자가 홀기를 잡은 듯한 형세라 집홀이란 한자표기가 마을이름이 된 자연마을 이름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1147-1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비파길 29-4	20151012	20090302	비파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814-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94-54	20151012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278-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328-1	20151012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54-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414	20151012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463-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뒷뜰길 109-24	20151012	20120125	정수와 접한 마을인데 의양의 뒷뜰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15-79호

## 농어촌 새뜰마을(범왕지구) 사업 기본계획 수립

1. 사업의 명칭 : 농어촌 새뜰마을[범왕지구] 사업
2. 사업의 목적 : 낙후된 농촌마을의 기초 인프라 개선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삶의 질 개선
3. 사업비 : 4,308,860천원
  - 국고 : 2,982,000천원, 지방비 : 1,212,000천원, 자부담 114,860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주택정비
    - 빈집철거
      - 생활안전 저해요소 제거, 지역 경관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정주만족도 향상
      - 일반건물 철거 2호, 슬레이트 주택 철거 7호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 생활안전 저해요소 제거, 지역 경관개선 및 주거기능 강화에 따른 주민들의 정주만족도 향상
      - 슬레이트 철거처리 37호
      - 지붕개량 37호
    - 주택수리
      - 방한, 방풍, 방습 등 기초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통한 주거의 본래 기능 강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 주택수리 32호
    - 재래식 화장실 철거
      - 위생적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 생활편의 개선
      - 재래식 화장실 철거 및 개량지원 10호

○ 경관시설정비

- 마을 담장정비

- 주요 안길 통행 안전성 확보 및 편의 개선, 아름다운 마을 이미지 조성
- 담장정비 3개 마을 600m

○ 기반시설정비

- 마을 도로정비

- 도로 안전사고 발생요인 해소에 따른 이동 안전성, 생활편의성 강화
- 도로선형 정비 30m
- 안전시설 설치 3개 마을 650m
- 도로측구 정비 3개 마을 1,500m
- 도로결빙구간 정비 3개 마을 7개소

- 마을 안길정비

- 마을 주민들의 보행환경 및 이동편의 개선
- 마을 안길 황토콘크리트 포장 11,154m<sup>2</sup>

- 상·하수도정비

- 주민 생활용수 관리 실시에 따른 생활 안전성 회복 및 기초 생활 여건 개선
- 취수 및 정수시설 설치 2개소
- 취수관로 정비 7,000m
- 하수관 본선, 지선 교체 및 신설 3개 마을 2,000m

- 하천정비

- 재해, 재난의 사전 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
- 하천 자연석(전석) 쌓기 150m

- 교량정비

- 마을 주민들의 이동편의 및 안전성 확보
- 교량 신설(노후 교량 교체) 1식

## 하 동 군 공 보

( 21 ) 제 442 호

### ○ 공공이용시설계획

#### - 마을회관정비

-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이용편의 및 이용의향 강화
- 노인 소일거리 나눔공간, 보부상길 쉼터 등 다목적 공간으로의 활용성 강화
- 원범왕마을 경로당 재건축 1식

### ○ 기타계획

#### - 휴먼케어

- 마을의 경관개선 및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식 확립, 공동체의식 강화
- 주민참여형 경관프로젝트 1식
- 마을 안전지도 만들기 1식
- 전문가 컨설팅 1식

#### - 주민역량강화

- 사업 이해도 제고, 공동체 의식 강화 및 신규 인적자원 발굴 등 마을 활성화 지원
-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이수 총 6인
- 선진지 견학 총 3회
- 홍보 및 업무추진 1식

5. 사업시행자 : 하동군

6. 사업기간 : 2015. 4. ~ 2017. 12.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의 명세서 (필요한 경우)

8. 기타

하동군 고시 제2015-81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02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28.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41-3 외 1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0.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23 ) 제 442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626-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길 141-3	20151028	20070618	염등만수 정자 숲의 서쪽 마을에서 유래된 정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726-5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19-1	20151028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 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 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 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11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중터길 38-1	20151028	20070618	남쪽의 새터가 생기자 중터 라고 부른 옛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490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상신대길 28-20	20151028	20070618	신대리 윗쪽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104-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침점1길 5	20151028	20070618	김수로왕 일행이 행차 도중 옷고름이 떨어져 이 곳에서 바느질을 하여 붙여진 자연 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리 274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금강길 41-11	20151028	20070618	마을앞에 흐르는 우계천의 물이 비단같이 아름다워 붙 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683-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촌길 28-44	20151028	20070618	원동매 서남쪽 평지에 있는 평촌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594-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길 21-1	20151028	20080402	뒷산의 형국이 반달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74-2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연막길 14-9	20151028	20080402	연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808-4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보길 27-10	20151028	20080402	횡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 하 동 군 공 보

( 24 ) 제 442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291-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길 20	20151028	20080402	법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산 66-8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봉곡길 45-20	20151028	20090302	마을 앞산이 황새모양의 지 형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리 23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공항길 238-47	20151028	20090302	공항리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32-1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767	20151028	20090302	황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58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신촌도심길 62	20151028	20090302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7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고성산동학 로 824-22	20151028	20090702	동학전적지인 고성산 지남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369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2490	20151028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 하 동 군 공 보

( 25 ) 제 442 호

고시 제2015-82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8일

### 하 동 군 수

####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변경)이유	비고
결정	군도	읍내~홍릉	하동읍 홍릉리	L=0.78km	하동군 하동읍 홍릉리 470번지	먹점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2.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3. 사업시행기간 : 2015년 4월 21일 ~ 2017년 4월 19일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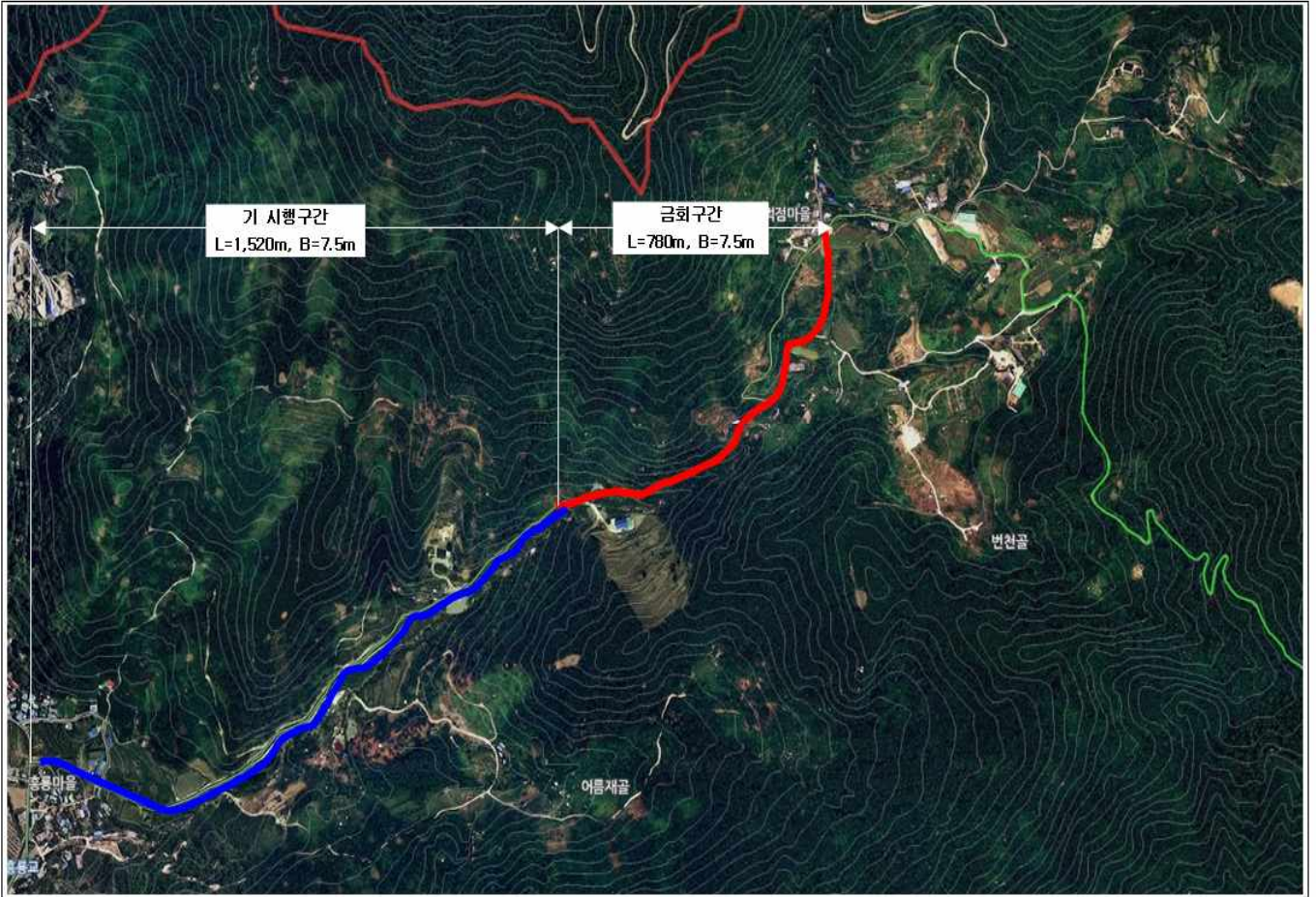
가. 기간 : 2015년 10월 30일 ~ 2015년 11월 19일

나. 장소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5. 토지조서 : 붙임

※ 용지도면은 하동군청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 먹점도로 확포장 위치도



## 하 동 군 공 보

( 27 ) 제 442 호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명	주소	
계							13,516			
1	하동	홍동	462	462-1	답	66	26	강인석	하동군 하동읍 홍동리 1338	
2	하동	홍동	464	464-1	답	337	186	강인석	하동군 하동읍 홍동리 1338	
3	하동	홍동	470	470-1	답	413	7	하영근	울산 남구 무거동 477-1 옥현주공 1단지 103동 1003호	
4	하동	홍동	산48-1	산48-2	임야	10,147	37	서보호	하동군 하동읍 홍동길 62-29	
5	하동	홍동	489	489-1	답	1,091	165	하영근	울산 남구 무거동 477-1 옥현주공 1단지 103동 1003호	
6	하동	홍동	472	472	답	205	205	강인석	하동군 하동읍 홍동리 1338	
7	하동	홍동	488	488-1	답	1,127	354	하영근	울산 남구 무거동 477-1 옥현주공 1단지 103동 1003호	
				488-2			12	하영근	울산 남구 무거동 477-1 옥현주공 1단지 103동 1003호	
8	하동	홍동	487	487-2	답	1,752	147	서보영	하동군 하동읍 홍동길 62-29	
9	하동	홍동	산50	산50-2	임야	23,802	854	박내삼 조길규	하동군 하동읍 홍동리 1343 하동군 하동읍 홍동길 44-17	
10	하동	홍동	산51	산51-1	임야	5,950	2302	서환생	하동군 하동읍 홍동리 1426	
				산51-2			156	서환생	하동군 하동읍 홍동리 1426	
11	하동	홍동	486	486	임야	142	142	김일서		
12	하동	홍동	산53	산53-1	임야	30,446	701	서재훈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201동 1806호(문암동, 한진아파트)	
13	하동	홍동	485	485	답	33	33	박주선	김해시 분성로 14, 104동 1603호 (외동, 일동 한신아파트)	
14	하동	홍동	484	484	답	350	350	박주선	김해시 분성로 14, 104동 1603호 (외동, 일동 한신아파트)	
15	하동	홍동	195	195	전	40	40	서경준		

하 동 군 공 보

( 28 ) 제 442 호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명	주소	
16	하동	홍동	197	197-1	전	298	161	김정숙 김정은 김정화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66-25 김해시 합박로 122, 210동 908호 (외동, 한국아파트)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210번길 34, 105동 902호(과법동, 사상강 변동원아파트)	
17	하동	홍동	산52	산52-3	일야	3,881	2,103	우효훈	부산 서구 암남공원로 39, 102동 402호(암남동, 송도동림아이원아 파트)	
18	하동	홍동	199	199-1	답	979	69	문종한	부산 수영구 수영동 460-6	
19	하동	홍동	191	191-1	전	397	128	허재중		
20	하동	홍동	200-1	200-4	답	2,315	718	문종한	부산 수영구 수영동 460-6	
21	하동	홍동	산56	산56-1	일야	992	40	조흥조		
				산56-2			183	조흥조		
22	하동	홍동	200	200-2	답	2,313	229	조은경	진주시 석갑로 58, 307동 1201호 (신안동, 신안3차주공아파트)	
				200-3			242	조은경	진주시 석갑로 58, 307동 1201호 (신안동, 신안3차주공아파트)	
23	하동	홍동	187	187-1	답	4,268	1,031	배관식	김해시 경원로 21, 303동 1006호 (내동, 경원마을현대아파트)	
24	하동	홍동	112-3	112-11	답	1,671	48	박종은	하동군 하동읍 홍동리 116	
25	하동	홍동	112-2	112-2	도르	212	212	원윤진수 자	하동군 하동읍 읍내동 1265	
26	하동	홍동	112-1	112-10	답	1,369	732	조철환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 219-8	
27	하동	홍동	134	134-8	답	3,910	45	조영기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막점길 202	
28	하동	홍동	487-1	487-3	답	155	58	서보영 김진권	하동군 하동읍 홍동길 62-29 하동군 하동읍 성진강대로 2471- 6	
29	하동	홍동	569		답	248	21	하동군		
30	하동	홍동	1751		토	1,874	1,088	국	국토교통부	

하 동 군 공 보

( 29 ) 제 442 호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소유자		비고
	읍면	리	당초	권입		전체	권입	성명	주소	
31	하동	홍릉	1741		구	81365	220	국	국토교통부	
32	하동	홍릉	산50-1		도	1349	356	국	국토교통부	
33	하동	홍릉	산52-1		도	992	78	국	국토교통부	
34	하동	홍릉	114-1		도	51	1	하동군		
35	하동	홍릉	112-9		도	138	16	하동군		
36	하동	홍릉	1745		도	767	5	국	국토교통부	
37	하동	홍릉	134-1		도	45	15	하동군		

하동군 고시 제 2015-83호

##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시행인가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7항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시행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5년 10월 일

###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전작 재배)

2. 사업내용 및 구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개간면적 (㎡)	사업용도	비고
면	리						
계		5			4,914		
청암	중이	971-2	임	711	711	전작재배	
		972	전	116	116	전작재배	
		1098	임	99	99	전작재배	
		1099	전	238	142	전작재배	
		산125-2	임	27,093	3,846	전작재배	

3. 사업비 : 금67,870천원

4. 사업예정기간 : 2015. 11. . ~ 2016. 6. 30.

5. 사업의 효과 : 개간사업을 통하여 전작재배로 농가소득증대

6. 사업시행자 :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961-2 정점세

## 입 간 판

하동군 허가 제2015- 호

1. 위 치 : 하동군
- 2.사 업 명 : 농업기반정비(개간)사업
- 3.면 적 : 4,914m<sup>2</sup>
- 4.사 업 비 : 67,870천원
- 5.공사기간 : 2015. 11. . ~ 2016. 6. 30.
- 6.허가일자 : 2015. 10. .
- 7.피허가자 :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961-2 정점세
- 8, 허가권자 : 하 동 군 수

	0.5m (0.9×0.9)	
	0.7m	



하동군 공고 제2015-891호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공유재산(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나. 입찰내용

입시 시설명	임대 면적 및 수량	용 도	소 재 지	위탁기간	예정가격
시설물	- 카라반(4~6인승) : 6EA - 모빌홈(6~8인승) : 3EA - 오토캠핑장 : 30EA (19EA는 2016년부터 사용) - 화장실(40㎡) : 1EA - 세척실(40㎡) : 1EA - 관리실(20㎡) : 1EA - 창 고(4.5㎡) : 1EA	다목적 캠핑장	경남 하동군 옥중면 두양리 1073-219 외 7필지	2년	금21,483,770원 (1년 단위)
토지	11,482㎡				

**※ 산정된 연간 민간위탁료 예정가액은 부가가치세(10%) 미포함된 금액임**

다. 위탁기간 : 2년(2015. 12. 1. ~ 2017. 11. 30.)

※ 사용료는 1년 단위 사용 개시일전 납부

###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 온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하 동 군 공 보

( 33 ) 제 442 호

### 3. 입찰 및 개찰 일정

- 가.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 나.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간 : 2015. 10. . 10:00 ~ 2015. 10. . 16:00 (7일간)
-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5. 10. . 10:00 하동군 문화관광실 입찰집행관 PC
- 라. 계약기간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 4. 입찰 참가자격

- 가.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용허가 조건을 수락한 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다. 공고일까지 1년이상 하동군에 주소가 등록된 자 또는 법인
- 라.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거래범용 공인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마. 동일 세대 및 가족관계 내에서는 1명만 입찰 참가 가능
- 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직영할 수 있는 자 (전대 시 허가취소)
- 사. 매점 등 관련 시설 운영에 따른 영업 신고 등 관련법 이행 가능한 자

### 5. 입찰서의 제출

-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 공고를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 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제2호에 의거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라.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바. 기타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하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7. 낙찰자 결정방법

-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를 온비드에서 자동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 시스템의 무작위 추첨방식(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한 경우와 입찰참가자격 등에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차 순위자순으로 낙찰된 것으로 합니다.
- 라. 입찰결과는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여부 확인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사항입니다.

## 8. 입찰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 나.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 다. 신청자격이 없거나, 서류미비,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및 낙찰 또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또한 계약 체결 후에도 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일방 해약하고, 사용료는 우리군에 귀속 조치합니다.

## 하 동 군 공 보

( 35 ) 제 442 호

### 9. 계 약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 제출서류 등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유 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그 낙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구비서류

- 1) 개인 또는 단체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 본
- 2)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 본
- 3) 사용인감계(법인만 해당) 1부
-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별지1) 1부
- 5)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지참

다. 계약체결기관 : 하동군청 문화관광실 (관광개발담당)

### 10. 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1년간 사용료를 우리군에서 발부받은 사용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내 납부 하여야 하며, 동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취소합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낙찰금액과는 별도로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약시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사용료로 대체 합니다.

라.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료를 미납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약 조치되며, 이때 계약보증금, 기 납부된 사용료는 우리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의 "온비드"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12. 매점운영

가. 캠핑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1개소의 매점을 지정된 장소 내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일반 편의점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게시 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매점 설치에 관한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매점은 홍수 시 등을 고려하여 이동이 가능하거나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라. 매점에서 조리음식은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시설을 타인에게 설치·운영하게 할 수 없다.

마. 운영할 수 있는 매점의 규모는 20m<sup>2</sup> 이내로 한다.

바. 매점운영계획서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하동군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조건, 입찰유의사항, 사용허가조건, 전자입찰관련법령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 재산의 여건, 허가조건 등을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기간·조건 및 기타사항 : 하동군 문화관광실 관광개발담당(☎055-880-2374)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온비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타(☎1588-5321)

붙임 : 공유재산 허가조건 (일반, 특수)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10월 일

하 동 군 수

## 공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으로 사용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정하여 2년 범위내 연장가능하다.

제3조(사용료) 연간 사용료는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하며,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하동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하동군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하동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하동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허가 취소가 불가피 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동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하동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동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하동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하동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 39 ) 제 442 호

제17조(영구시설물 등의 설치 및 원상회복) 사용인은 사용·수익 재산상에 고정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만일 무단점유 설치할 경우 고정시설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하동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용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하동군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기타사항) 이 허가조건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특수조건을 두며, 특수조건도 허가조건으로 간주한다.

2015년 월 일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성 명(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 공유재산 사용 · 수익 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사용인이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법규준수 및 책임)** 사용인은 운영과 관련된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민 · 형사상 제반 책임을 진다.

**제3조(신고 등의 이행)**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 승인 후 즉시 운영에 필요한 신고 허가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낙찰자)과 사업자는 등록상의 대표자의 명목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제비용 부담)** ① 사용 허가한 장소에 인테리어 공사, 시설물 설치 및 개 · 보수를 할 때에는 하동군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취소 등 어떠한 사유로도 동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매점, 관리사 구역의 전기요금은 사용인이 부담하고, 텐트 및 카라반, 모빌 홈 구역의 전기요금은 하동군이 부담한다

③ 사용인은 캠핑장의 인터넷예약 및 전자결재시스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부담한다 (매월 30만원 정도)

**제5조(사용운영)** 사용인은 허가기간 중 화재, 가스, 전기 및 식중독 등 제반 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주장)**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추후 부대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게 영업권을 포기하고 운영에 따른 시설물과 권리금 명분의 비용을 하동군이나 제3자에게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운영수익에 대한 보장)** 사용인 스스로 운영수익 관련 시장조사, 수용조사를 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운영수익 결과에 대하여 하동군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 동 군 공 보

( 41 ) 제 442 호

제8조(시설·비품인수) 사용인은 하동군에서 설치한 시설 및 비품을 확인한 후 인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실적 보고서 등 제출) 사용인은 하동군의 요구 시 운영실적 및 상품의 구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5. . .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고 승낙함.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
- 성 명(대표자) : (인)

하동군수 귀하

공 유 재 산 사 용 허 가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1073-219번지 외 7필지
- 용 도 :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 토지면적 : 11,482㎡
- 주요시설 : 모빌홈 3개소, 카라반 6개소, 텐트면 30개소, 화장실 1개소  
세척실 1개소, 관리사 1개소, 매점 1개소 등

○ 사용기간 :

○ 사용목적 :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 사 용 료 :

○ 사용조건 :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15 - 896호

## 섬진강 신기지구 저수호안 보수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남원국토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섬진강 신기지구 저수호안 보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20일

하 동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섬진강 신기지구 저수호안 보수공사
- 나. 위 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지내
- 다. 사 업 량 : 저수호안정비 L=1.2km, H=5.0
-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1080일)
- 마.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남원국토관리소)

###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

###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5년 10월 20일 ~ 11월 3일(15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055-880-2532~6)
-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5년 11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동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2~6)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하 동 군 공 보

( 45 ) 제 442 호

### 토 지 사 정 조 서

#### 섬진강 신기지구 저수호안 보수공사(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비고
1	신기리	394	전	1,510	24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611-37	허대곤	
2	신기리	388-2	현	582	45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160	미완산	
3	신기리	374-3	잡	341	284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357-1	임종근	
4	신기리	375	현	175	146	읍내리 880	이후근	
5	신기리	321	대	317	48	신기리 361	윤종만	
6	신기리	319	대	249	36	신기리 317	박상규	
7	신기리	315	대	1,034	56	출산광역시 남구 머은로3번길 13(무거동)	추교회	
8	신기리	296-3	대	121	13	창원시 상남동 45-1 성원아파트 204-105	남진영	
9	신기리	296-4	대	21	21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298	조기봉	
10	신기리	296-1	대	301	66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298	조기봉	
11	신기리	296-2	대	533	149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296-2	미두석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비고
12	신기리	287	대	314	83	신기리 298	조윤부	
13	신기리	286	대	205	103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84, 201동 1002호(화장동,무학아파트)	배강길	
14	신기리	285	대	124	33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84, 201동 1002호(화장동,무학아파트)	배강길	
15	신기리	283-3	도	30	17	하동읍 읍내동 449-1	재단법인하동육영원	
16	신기리	283-2	전	132	2	하동읍 읍내동 449	재단법인하동육영원	
17	신기리	269	전	172	130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286	정상현	
18	신기리	산63-2	임	1,488	18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365	배정수	
19	목도리	산70-1	임	3,074	113	동해시 천곡동 997 경포아파트 5동 409호	배출길	
20	목도리	826-1	대	93	38	창원시 봉곡동 159-17	조기준	
	합계			12,806	1,615			

하동군 공고 제2015-912호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8 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128조 및 제132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신고업무 특례】 를 신설
-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 업무를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함

3. 주요 내용

-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1월7일까지 하동군참조 : 재무과, 전화880-2272, FAX 880-2279)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하동군공고 제2015-913호

##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5. 07. 01.
2. 결 정 · 공 시 일 : 2015. 10. 30.
3. 결 정 · 공 시 필 지 수 : 2,329필지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하동읍	308필	고전면	115필	북천면	72필
화개면	169필	금남면	416필	청암면	99필
악양면	160필	진교면	140필	옥중면	186필
적량면	344필	양보면	64필	금성면	151필
횡천면	105필				

4. 결 정 · 공 시 내 용 : 토지지번별 m<sup>2</sup>당 가격  
(토지지번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

### 5. 이의신청 및 처리

####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5. 10. 30. ~ 11. 30.
-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우편 접수 가능  
(전자민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민원신청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055-880-21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10 월 30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15 -915호**

하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8.

# 하 동 군 수

## 하동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행정예고

###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대상 각종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3. 공 고 방 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http://www.hadong.go.kr>)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5. 10. 28. ~ 2015. 11. 20. (20일간, 공휴일제외)

5. 설치예정장소 : 하동초등학교 후문일원

초등학교명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비 고
		고정	
하동초등학교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98-1	2	후문일원

6. 의견제출

○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5. 11. 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도로관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으므로 처리합니다.

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55-880-2509)

라. 보내실 곳 : 우 667-805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23 (읍내리180)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055-880-2522~2526)

【 붙임 1 】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하동초등학교(후문)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 하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